



서대문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민원회신

2016.06.16. 서울시_응답소 및 진정민원으로 접수하고,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되어 참여마당 등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민 원 인 : ***** 외 28인
2. 민원요지 : 연희제1구역재개발사업 관련 불편 및 직권해제 절차 진행 요청
(붙임문서 참조)
3. 민원회신내용

가.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나. 서울시_응답소 및 진정민원으로 접수하고,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되어 참여마당 등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

1) 귀하께서는 2016.06.28.(화) (관리처분)총회 안내 후 조합에서 O/S요원에 의한 서면 결의서 징구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 신청서 제출 주민에 대한 조합사용비용 부과 등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주민이 불안함을 겪고 있고,

연희제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519명 중 분양신청자(299명)의 과반수 찬성 (150명 이상)에 의한 찬성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며,

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한 기간이 1년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/3이상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징구를 위해 조합 관리처분총회 통과와 무관하게 해산동의서를 접수 받아 직권해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

2) 먼저,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겪고 계신 불편들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, 현재 우리구에서는 조합에 O/S요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 신청서 제출 주민에 대한 조합사용비용을 부과한다는 판단 등을 금지토록 유선 및 공문을 통해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3) 아울러, 관리처분계획 의결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28조 등에 조합원 20%의 직접참석 및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해 총회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

4) 정비구역 직권해지에 대한 사항은 연희제1구역은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(이하 ‘서울시조례’) 제4조의 3(정비구역 직권해제 등)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,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선행될 경우 구청이 임의로 직권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의견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, 현재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사항들을 질의하였으며,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. 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.

5) 무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정비과(변재원, ☎ 330-1556)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- 붙 임 : 1. 민원접수내용(탄원서) 1부.
 2. 다수인관리카드(***) 1부. 끝.